

#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김성기 의원)

의안 번호	334
----------	-----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8일

발 의 자: 김성기 의원

찬 성 자: 남진삼, 박춘희, 이창열의원

## 1. 제안이유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제안함.

##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지원(안 제5조)
-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법예고: 2024. 9. 11. ~ 2024. 10. 2.(21일간), 의견 없음.
- 집행기관의견수렴: 2024. 8. 30. ~ 2024. 9. 10.(11일간), 의견 없음.

##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 (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재원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제작·기술개발 등 지원
2.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홍보·마케팅
3.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4.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군수는 군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0., 2011. 5. 25., 2014. 1. 28., 2016. 3. 29., 2020. 2. 11., 2020. 12. 8., 2022. 5. 3., 2023. 5. 16., 2023. 8. 8.>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3.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5.>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 7. (생략)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제5조(지원)**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군수는 군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연락처	(033) 330 - 2850